대체휴무제 운영

☐ 개요/근거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소속 직원에 대해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무일(토요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체협약 제53조 제3항, 복무관리지침 제24조)

☐ 운영 Process

시 기	내 용	비 고
① 휴무일근무 지시	• 복무권자의 휴무일근무 지시	복무권자→직원
② 복무입력	• 휴무일근무 및 대체휴무일 입력 ※ 복무권자와 협의 후 대체휴무 결정	직원→복무권자
③ 복무승인	• 휴무일근무 및 대체휴무일 승인	복무권자→직원
④ 휴무일근무 수행	• 휴무일근무 실시	직원
⑤ 휴무일근무 확인	• 휴무일근무 여부확인 → 휴일근무일 이후 승인가능	복무권자
⑥ 대체휴무 실시	• 대체휴무 지정일 휴무 실시	직원

☐ 유의사항

○ 대체휴무지정시 사전 지정 (사후 대체휴무 지정 및 변경 불가)
- 대체휴무일은 휴무일 근무일로부터 1주일내 정상근무일을 지정

※ 참조판례 : 판례(대법 2008.11.13. 선고2007다590 판결)

○ 계획된 대체휴무일에 반드시 휴무 실시
- 단,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휴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대체휴무일에 청원휴가 사유 발생 등에 의한 취소는 가능

○ 신설된 반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지정 불가

[붙임]

□ 판례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FAQ

Q1. 휴무일 근무시 대체휴무일 지정은 필수 인가요?

A.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고도 주중에 인력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이 휴무일(토요일) 근무를 시스템에 입력시 함께 대체휴무를 신청토록 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휴무일 근무가 있은 후에) 대체휴무일 지정이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Q2. 대체휴무일은 꼭 복무입력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후에 취소는 안되나요?

A. 대체휴무일은 복무입력시에 지정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무일근무 후 대체휴무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휴무일에 휴무를 못한 경우에 대체휴무일 취소는 가능(개발예정)하며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정상지급됩니다.

Q3. 휴무일 근무시 대체휴무일을 미지정하고 휴무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주중에 인력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입력시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6월 30일 등 월말에 휴무일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익월로 대체휴무일을 지정해도 상관없나요?

A. 네, 정상적으로 처리 됩니다